

## 6. 地價公示 및 土地等の 評價에 관한 法律施行規則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建設交通部公告 第1996-100號 1996. 3. 30

### 1. 개정이유

1995년 12월 29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의 첨부서류중 “토지대장등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함.

나. 당해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가 휴·폐업 또는 업무정지등의 사유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을 행할 수 없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검증을 행할 감정평가업자를 따로 지정토록하여 검증업무의 원

활한 수행을 도모토록 함.

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토록하여 일반 국민이 용이하게 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라. 현행 3천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원활한 시험시행을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시험시행 공고시 같이 공고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토록 하여 부정행위의 방지를 도모함.

바. 개별공시지가의 견제출서등 일부 서식을 새로이 규정하고, 기타 현행 서식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토지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지가조사1과(500-4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설마’하면 부실시공 ‘혹시’하면 성실시공**